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 신설).

II. 검토의견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결과 반영 필요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의 구

축·획득, 연구단지·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¹⁾,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²⁾

○ 이는 「국가재정법」 제38조³⁾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 제6433호

-
- 1) 안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관제·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 안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및 제6706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박 혜 진)